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제23호 (2019년 8월)

유럽 축구리그에서의 인종차별을 향한 대응

- K리그1에서의 시사 -

이 창 규*

목차

Ⅰ. 서
Ⅱ. 인종차별의 법적 개념과 역사적 배경
Ⅲ. 유럽 축구리그에서의 인종차별 대책 분석
Ⅳ. K리그1에서의 시사
Ⅴ. 결

| 국문초록 |

스포츠(sports)는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는 서로 다른 종교, 출신, 인종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특수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스포츠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올림픽과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회나 월드컵과 같이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대회가 대표적이다.

수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축구는 지구촌 최고의 인기 스포츠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으며, 아무리 인구가 적고 열악한 국가라도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다. 이같이 축구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규칙과 공간과 인원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초보자들만으로도 게임이 성립되기 쉬운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축구이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리그에서

* 사단법인 한국기술거래사회 팀장 / 법학박사
논문접수일 : 2019. 6. 25., 심사개시일: 2019. 8. 1., 게재확정일 : 2019. 8. 27.

선수와 선수, 선수와 관중, 관중과 관중 사이에 감정이 격해져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부색과 출신 등의 차이를 이유로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충돌할 때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국제 스포츠 단체도 인종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종차별행위가 더 다른 나라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축구에서의 인종차별행위는 주로 SNS에서 발생하며, 유색인종에 대한 비난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축구 경기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축구협회 등이 실시해야 개선책으로 SNS 관련 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인종차별 게시물 방지 시스템과 서포터를 향한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축구, 인종차별, K리그1, 보스만 판결, 인종차별 대응

Ⅰ. 서

스포츠(sports)는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1] 이러한 스포츠는 서로 다른 종교, 출신, 인종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특수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2] 대표적인 스포츠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올림픽과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IOC)가

1) 헌법에서 스포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간의 신체적 활동과 관련하여 정의되기 때문에「헌법」제10조,「헌법」제12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 김상겸, “스포츠기본권의 보장과 국민체육진흥의 법적 과제;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11, 80-81면.

2) 남기연,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과 그 책임에 관한 연구”,「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8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5, 154면.

주관하는 대회나 월드컵(FIFA World Cup)과 같이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이하 “FIFA”로 지칭함)이 주관하는 대회가 대표적이다.

수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축구는 지구촌 최고의 인기 스포츠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으며, 아무리 인구가 적고 열악한 국가라도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다. 이같이 축구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규칙과 공간과 인원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초보자들만으로도 게임이 성립되기 쉬운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축구는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월드컵 자국 경기의 시청률이 80%에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제일 큰 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3)]

이렇듯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축구이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리그(league, 이하 “리그”로 지칭함)에서 선수와 선수, 선수와 관중, 관중과 관중 사이에 감정이 격해져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부색과 출신 등의 차이를 이유로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충돌할 때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FIFA나 유럽축구연맹(Union of European Football Associations, 이하 “UEFA”로 지칭함)과 같은 국제 스포츠 단체도 인종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종차별행위가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의 K리그1에서도 선수나 관중에 의한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가 이슈화될 수 있는 만큼 경기장 안팎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종차별적 비하발언에 대한 근절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글에서는 축구 경기에서의 인종차별행위를 근절하기

---

3) 한국일보, “유럽 축구 시장 32조 원 규모 사상 최대…EPL만 6조, 〈http://bitly.kr/uB0yPF〉, (최종방문일 2019년 6월 12일).

위해 유럽축구리그에서의 인종차별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종차별의 법적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본다(이하 "II."). 이후 유럽 축구리그에서의 인종차별 대책을 분석하기 위해 보스만 판결(이하 "III. 1.")을 알아보고 유럽축구리그에서의 인종차별 행위의 유형과 대책을 알아본다(이하, "III. 2."). 이러한 검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K리그1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K리그1에서의 인종차별 현황을 알아보고(이하 "IV. 1."), K리그1에서의 인종차별 예방방안을 제시한다(이하 "IV. 2.").

Ⅱ. 인종차별의 법적 개념과 역사적 배경

1. 인종차별의 법적 개념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人種差別)이란 인종적 편견을 통해 특정 인종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행위이다.[4] 인종차별의 바탕이 되는 인종주의(racism, 人種主義)는 인종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사상을 말한다.[5] 기본적으로 인종주의는 특정 인종이 他 인종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주의(排他主義)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인종차별은 다른 인종인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거나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6]

---

4) Ian Preston and Stefan Szymanski, RACIAL DISCRIMINATION IN ENGLISH FOOTBALL,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47, No.4, September 2000, at 349-350.

5) CLELAND, J. and CASHMORE, E., Football fans' views of racism in British football.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51, No.1, 2016, at 7.

한편, 인종차별의 법적 개념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1조 제1항에서 알 수 있다.[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종의 범위에 생물적인 특징인 ‘인종, 피부색, 가문(혈통)’과 문화·언어적인 특징인 ‘민족이나 종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인종을 의미하고, 차별은 ‘구별, 배척, 제한, 우선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협약 제1조 제2항은 당사국이 외국인을 국민과 구별하여 非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차별을 할 경우(배척, 제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 이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당사국이 국적, 시민권, 귀화에 관하여 이민법규의 해석을 함에 있어 이 협약의 규정은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이민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하면서 차별을 할 때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항은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등과 같이 외국인의 지위로 인하여 배제되는 경우와 함께 「해외이주법」, 「국적법」, 「난민법」 등과 같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의 해석에 있어 이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2. 인종차별의 역사적 배경

인류의 역사를 반추해보자면 인종차별이 크게 이슈화된 것은 바로 근세의 식민지 제도(colonial system)가 발달한 이후의 일이다.[8]

---

6) *Ibid.* at 9.

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외교부, 〈http://www.mofa.go.kr〉에서 참고함(최종방문일 2019년 6월 12일).

8) Hira Singh, Confronting Colonialism and Racism: Fanon and Gandhi, *Human Architecture: Journal of the Sociology of Self Knowledge*, Vol.5, Iss. 3, Article 31,

백색인종은 유색인종을 비기독교인으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후 신학의 대논쟁을 거친 후에야 기독교로 개종해야만 인간으로 취급하게 되었다.[9] 이러한 변화를 촉구하게 된 것은 바로 노예로서 유색인종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10] 이후 백색인종은 인종주의를 창설하여 더욱 인종차별이 만연하게 되었다.

수많은 백색인종들은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인종차별을 당연한 일로써 받아들였다. 이렇듯 인종차별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라는 개념에서 백색인종과 유색인종이라는 대립으로 변모하였다.[11]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끌려간 흑인은 1,500만 명에 육박하였다.[12] 그리고 노예사냥과 운송 도중에 사망한 흑인은 3,500만 또는 4,0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13] 이처럼 식민지 제도로부터 시작된 인종차별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종차별은 다양한 형태를 달리하면서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내재하여 왔다. 백색인종은 유색인종에 대한 토지와 주권을 강탈하고 국적 및 소유권, 참정권 등의 정치적 권리와 언론과 출판, 거주, 직업, 결혼, 교육 등 시민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였다.[14] 동시에 정부의 행정권한의 행사를 백색인종이 독점하다시피 하였으

2007, at 343.

9) 김혜명, "흑인의 과학적 인종주의에 관한 고찰 : 보아서 학파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제9권 제2호,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2018, 312면.

10) 위의 논문, 313면.

11) 위의 논문, 322면.

12) UN 홈페이지, 〈http://www.un.org/en/events/africandescentdecade/slave-trade.shtml〉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13) Babacar M'Baye,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Impact of the Atlantic Slave Trade on Africa, *European Legacy*, 11(6), 2006, at 610.

14)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142면.

며,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 금융거래의 제한을 하였다. 또한, 언어의 사용방식과 예의범절을 규제하고 공공시설과 오락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법적 제재는 물론 심할 때 감독에 가두는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인종차별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변화했다. 먼저 전후 식민 제도의 철폐에 따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유색인종의 많은 정치적 권리회복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다. 또한, 국제기구인 유엔(UN)을 통해 인종차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종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지만, 남부 아프리카, 미국 남부,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는 법률에 따른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이어졌다.[15)]

이후 1960년대 이후 아직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 독립과 함께 미국의 흑인을 중심으로 한 블랙 내셔널리즘(Black nationalism)을 계기로 세계 각지의 유색인종들의 긍지 강화와 인종차별 해소 운동이 발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유색인종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항쟁은 심화하였고, 당해 활동은 하나의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적 움직임으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에서의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었고, 나아가 호주의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가 철폐되었다. 이렇듯 많은 인종차별 문제가 개선되었지만 아직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은 남아있으며, 특히 스포츠 중 축구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16)]

---

15) SHULA MARKS, *White Masculinity: Jan Smuts, Race and the South African War*,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111, 2001, at 200.

16) Rayner Thwaites, *REPORT ON CITIZENSHIP LAW : AUSTRALIA*, Global Citizenship

Ⅲ. 유럽 축구리그에서의 인종차별 대책 분석

1. 보스만 판결과 비유럽권 선수의 활동 가능

가. 보스만 판결의 소개

유럽(Europe, 이하 “유럽”으로 지칭함)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축구 리그는 50개 이상이다. 이 중에서도 스타 선수들이 모여 실력과 인기를 겸비한 소위 5대 리그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Premier League, 이하 “프리미어 리그”로 지칭함),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PREMIER LIGA, “이하 프리메라리가”로 지칭함), 이탈리아의 세리에 A(Serie A, 이하 “세리에 A”로 지칭함), 독일(Germany)의 분데스리가(Bundesliga, 이하 “분데스리가”로 지칭함), 프랑스의 리그1(Ligue 1, 이하 “리그1”로 지칭함)이다.[17] 이 5개의 리그가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보스만 판결(*Union Royale Belge des Sociétés de Football Association ASBL v Jean-Marc Bosman*, 이하 “보스만 판결”로 지칭함)의 영향으로 다국적 선수들이 유럽 내 다양한 축구리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18]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990년 벨기에의 벨기에 퍼스트 디비전 A(Belgian First Division A) 리그의 RFC 리에주(RFC Liege)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던 장-마르크 보스만(Jean-Marc Bosman)은

Observatory, 2017, at 4.

17) Hugo Sarmento, Antonino Pereira, Nuno Matos, Jorge Campaniço, Maria T., Anguera, and José Leitão, *English Premier League, Spain's La Liga and Italy's Serie's A-What's Differ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erformance Analysis in Sport, 2013, 13, at 774-775.

18) 장민, “유럽 축구리그의 이적제도와 유럽사법재판소의 보스만 판결”,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247면.

클럽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프랑스 리그1 2부에 소속된 FC 뒹커크(Dunkerque)로 이적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FC 뒹커크(Dunkerque)는 RFC 리에주에 주기로 한 이적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에 RFC 리에주에 선수로 등록되지 않았고, 보스만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1995년에 판결이 내려져 보스만의 승소가 확정되었다.[19)]

이 보스만 판결 이후 첫째, 보스만을 비롯한 EU의 선수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노동자는 EU 역내이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EU내에서의 노동 조건이 축구선수들에게도 적용되었다. 결국, 이 판결 이후 유럽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들은 다른 유럽에서 태생한 선수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

이 판결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소속 구단의 눈치를 보면서 이적을 못 하게 된 상황이 없어졌고, 유명 선수의 유럽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선수가 1개의 구단과 계약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2~3년 동안 화려한 활약을 한 뒤, 소위 대형 클럽에 이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자금력이 있는 구단들은 유럽 전역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선수를 모아 수준 높은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20)]

---

19) Smith, Marvin, Union Royale Belge de Sociétés de Football Association ASBL v. Jean-Marc Bosman: The Evolution of Labor Law in Professional Soccer and its Implication, *Claremont-UC Undergraduate Research Conference on the European Union*, Vol. 2007, at 4.

20) *Ibid.*, at 18.

나. 보스만 판결의 축구선수 인종차별에 대한 영향

보스만 판결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온 선수들이 유럽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유럽축구 리그에서 선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비(非)유럽권 출신 선수에게 유럽리그로 이적할 기회가 주어졌다.[21] 특히, 보스만 판결의 선고 이후 유럽축구 리그에 소속된 구단들 내의 인종 구성도 상당히 다양해졌다. 예컨대 지네딘 지단(Zinedine Zidane) 등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프랑스 대표팀과 메수트 외질(Mesut Özil) 등 해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독일 대표팀이 각각 1998년과 2014년 월드컵을 제패하면서 축구는 다양성의 스포츠라는 인식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다.[22] 또한, UEFA는 1992년에 개막한 챔피언스리그(UEFA Champions League)를 고급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발전시켰다. 결국, 1995년 보스만 판결 이후 유럽축구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인종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경기장을 누빌 수 있도록 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23]

2. 유럽 축구리그에서 인종차별 행위와 대책

가. 축구 경기에서의 인종차별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경기인 축구는 대중적인 스포츠이

---

21) Jon Garland and Michael Rowe, *Racism and Anti-Racism in Football*, PALGRAVE, 2001, at 15.

22) Cathal Kilcline, *Sport and Society in Global France: Nations, Migrations, Corporations (Studi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France)*, Liverpool University Press, March 1, 2019, at 34.

23) *Ibid.*, at 115.

지만, 여느 게임과 마찬가지로 승패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비단 축구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역설적으로 서로 대립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게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모든 게임이 경기장 안에서 이기고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와 타인이라는 두 분류로 나누는 생각은 손쉽게 타인을 배제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나아가 이 분위기는 인종, 성별, 종교 등과 관련된 차별이 이루어진다.

지난 수년간의 여러 가시적인 인종차별 타파에 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례와 통계들은 인종차별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다. 유럽의 축구장 내 인종주의를 감시하는 단체인 FARE(Football Against Racism in Europe)는 2014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월드컵에서의 총 64개의 경기 중 12개의 경기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다.[24] 보고된 12건의 인종차별 행위 중 6건은 新나치주의와 백인우월주의에 관한 행위였다고 한다. 또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성 소수자를 조롱한 행위도 3건이 있었다고 한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큰 국제경기인 월드컵에서 개최된 경기에서 약 18% 정도의 차별에 관한 사건 보고가 있었다는 것은 모든 행위에 대한 보고라고 할 수 없다.[25]

IT 기기를 활용한 관중들의 기록 여건이 나아지면서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 간의 언행, 응원단들의 구호나 행동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요소를 잡아내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쉬운 일이 되었다. 반면 인종 문제 외적인 측면, 예컨대 여성, 성 소수자, 장애우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체계적인 정량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24) UNESCO, *Colour? What Colour? Report On The Fight Against Discrimination And Racism In Football*, 2015, at 25.

25) *Ibid.*, at 26.

나. 유럽 축구리그에서 인종차별 행위

(1) 팬(fan)을 통한 인종차별 행위

유럽 축구리그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 사례는 팬들에 의한 인종차별적인 응원이나 조롱이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2006년에 카메룬 출신의 사무엘 에투(Samuel Eto'o) 선수가 무차별적인 야유를 받았다. 이후 이 선수는 심판에게 강력한 항의하고 장내 방송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여 경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야유를 받았다.[26]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는 2017년 4월에 가나 출신 설리 알리 문타리(Sulley Ali Muntari) 선수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9월에 콩고 민주 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에 뿌리를 둔 벨기에 출신의 로멜루 루카쿠(Romelu Menama Lukaku Bolingoli) 선수에게 인종차별행위를 하였다.[27]

또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로 지칭함)를 통하여 인종차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에는 프리미어 리그 리버풀 FC(Liverpool FC)에 소속되어 있던 가나에 뿌리를 둔 이탈리아(Italy) 출신의 마리오 발로 텔리(Mario Barwuah Balotelli) 선수가 SNS를 통하여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받았다.[28] 발로텔리 선수는 2014/2015 시즌 24의 트위터(Twitter)와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공식 계정을 통해 자신의 팬들에게 일상을

---

26) 텔레그래프, "Eto'o on verge of walking off after racist abuse at Zaragoza", 〈http://bitly.kr/pqpIEX〉,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27) 비비씨, "Manchester United: Romelu Lukaku chant is 'racist' - Kick It Out", 〈https://www.bbc.com/sport/football/41317495〉,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28) 영국 텔레그래프, "Mario Balotelli has received more than 4,000 racist messages on social media this season", 〈http://bitly.kr/6Ip1rS〉,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알려주고 있었지만, 2015년 4월에 이미 8,000통의 모욕적인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4,000통이 인종차별 메시지라고 밝혔다.

특히, 발로텔리 선수는 지금까지 많은 인종차별을 받아온 선수 중 하나이며, 2017년 1월에 프랑스 리그1에서 상대 서포터에서 원숭이를 흉내를 내는 응원가에 의한 인종차별행위를 당하였다.[29] 2014/2015 시즌에서 그의 다른 자메이카에 뿌리를 둔 영국 출신의 대니 스터리지(Daniel Andre Sturridge) 선수는 16,000통, 대니 웰벡(Daniel Nii Tackie Mensah Welbeck) 선수는 17,000통의 인종차별 메시지를 받았다.[30]

인종차별행위가 한순간 사라질 수 없다. 축구가 지금보다 더 포용적이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해 모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현재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축구계에서의 인종차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들이 경기장 내에서 혹은 밖에서 인종주의와 이민족 혐오, 남성우월주의, 동성애 혐오 등을 몰아내는 데 동참하고 있다.

(2) 선수에 의한 인종차별 행위

선수에 의한 인종차별 행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인종 비하적 발언이다. 2011년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루이스 수아레스(Luis Alberto Suárez Díaz) 선수가 세네갈 출신의 프랑스인인 파트리스 에브라(Patrice Latyr Evra) 선수에게 흑인을 뜻하는 '니그로

29) 더 가디언, "Mario Balotelli asks: 'Is racism legal in France?' after accusing Bastia fans", 〈http://bitly.kr/rsGz7W〉,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30) 디스 이즈 안필드, "Daniel Sturridge discusses experiencing racism as a player", 〈http://bitly.kr/TS7h80〉,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Negro)'라는 말을 사용하여 도발하였다.[31)]

그리고 몸짓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2013년 프랑스 출신의 니콜라 아넬카(Nicolas Sebastien Anelka) 선수가 웨스트 햄 FC(West Ham United Football Club)와의 경기에서 득점한 후 반유대주의(antisemitism)의 자세를 하였다.[32)] 프랑스 리그1에서도 2007년에 올림피크 리옹(Olympique Lyonnais) 소속 체코 출신의 밀란 바로시(Milan Baroš) 선수는 상대의 스타드렌 FC(Stade Rennais Football Club) 소속 카메룬 출신의 스테판 음비아(Stéphane Mbia Etoundi) 선수에게 경기 중 신체를 노출하였다.[33)] 이때 자신의 코를 잡고 다른 쪽 손을 부채질같이 사용하여 냄새 물건처럼 취급 인종차별행위를 취하였다.

이처럼 유럽 축구리그에서 인종차별이 횡행하고 있으며, 차별의 대상이 된 선수 및 방법은 말한 것 이외에도 다양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식민지 시대부터 뿌리내린 인종차별행위가 현재의 축구에서도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유색인종 중 흑인 선수에 대한 차별행위가 도드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유럽 축구리그에서의 인종차별 대책

(1) 독일 분데스리가의 대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축구리그에서 보스만 판결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선수가 각 클럽에 소속될 수 있게 되어 유럽의 축구

---

31) 비비씨, "Luis Suarez charged with racially abusing Patrice Evra", 〈https://www.bbc.co.uk/sport/football/15764900〉,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32) 더 가디언, "Nicolas Anelka faces lengthy ban after controversial quenelle gesture", 〈http://bitly.kr/OdQuNF〉,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33) 스카이 스포츠, "Baros denies racism claims", 〈http://bitly.kr/aBSc0J〉,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수준은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고통스러운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분데스리가는 1963년에 설립된 독일축구리그(Deutsche Fußball Liga : DFL)가 관장하고 있다. 분데스리가는 18개의 구단과 2. 분데스리가(2. Bundesliga)가 18개 구단으로 이루어져, 모두 36개의 구단이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독일축구협회(Deutscher Fußball-Bund, 이하 "DFB"로 지칭함)가 관장하는 3리가(3. Liga), 4부 레기오날리가(Regionalliga)가 있다.[34]

분데스리가의 큰 특징의 하나로서 외국 국적 선수 취급에 관한 사항이다. 분데스리가는 2006/2007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범위를 철폐하였다. 2006/2007 시즌 이전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 이외의 외국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명이었다. 그러나 독일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srecht)이 개정되어 시민권을 취득하기 쉬워져 독일인 이외의 선수가 늘어날 수 있었다.[35] 이후 외국인 선수 범위를 5명으로 늘리거나 3명으로 다시 복원하는 방법을 시행하던 중 2006/2007년 시즌부터 완전히 철폐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각의 구단들은 독일 국적의 유스(youth) 출신 선수의 등록도 의무화하였다. 각각의 구단들은 최소 12명의 독일 국적 선수를 등록해야 하고, 8명 이상은 반드시 그 지역 출신 선수이어야 한다. 또한, 4명 이상은 그 구단의 유스(youth) 출신이어야 한다는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36] 이러한 제도의 영향으로 K리그1에서 분데스리가

---

34) FABIO WAGNER, HOLGER PREUSS, KIM SCHU, *Mainzer Papers on Sport Economics & Management*,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of Mainz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19, at 3.

35) Heinrich-Böll-Stiftung, Fußball & Integration, 2006, S. 20.

36) 독일 알 방 네 포털, "Vielfalt schießt Tore: Ausländische Spieler in der Fußball-

로 이적하는 한국 선수도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수 이적 및 양성정책은 각각의 클럽이 자가 부담으로 우수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어야 다른 축구리그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DFB는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2002년부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366개소에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11세부터 17세까지의 우수한 선수를 모은 뒤 1,000명의 코치와 각 지역을 총괄하는 전문가들에게 선수 육성을 맡기고 있다.[37] 선택된 선수는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DFB는 366개소의 거점과는 별도로, 분데스리가 1부와 2부에 소속된 모든 클럽들에 교육 센터와 선수 기숙사를 건립하여 선수 육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38]

이처럼 독일은 외국인 선수 범위의 철폐를 하였지만, 독일 특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독일 자국 선수들이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2014년 FIFA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분데스리가는 세계 최고의 관객 동원 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2016/2017 시즌에는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갱신했다.[39] 여기에는 관객 동원 성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준 높은 리그가 완성된 것도 크나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분데스리가는 자국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의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실력과 인기를 겸비해 오고 있다.

Bundesliga", 〈http://bitly.kr/ZagHsT〉,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37) 독일축구협회, 〈http://bitly.kr/0c8hZw〉,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38) Deutscher Fußball-Bund, Football is the Future, 2013, S. 35-36.

39) 웰트푸스발, "Bundesliga 2016/2017 » Zuschauer » Heimspiele", 〈https://www.weltfussball.de/zuschauer/bundesliga-2016-2017/1/〉,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2) 민간기구의 활동

유럽 축구리그에서는 인종차별에 맞서는 유럽 축구(Football Against Racism in Europem, 이하 "FARE"로 지칭함)'를 통해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은 단체는 유럽축구 서포터즈(Football Supporters Europe : 이하 "FSE"로 지칭함)라는 응원문화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NGO)이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 내용은 인종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기관지(機關紙)를 발행하고 계몽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는 유럽 내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관한 사건을 다루거나 유럽 전역에서 축구와 관련된 인종차별 반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축구를 총괄하는 UEFA는 주로 FARE와 연계하여 인종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0)]

개별 국가에서 반(反)인종차별행위를 행하는 단체로는 영국에서 1997년에 설립된 "Kick It Out"이라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1993년의 the Let's Kick Racism Out of Football campaign에서 시작된 것으로 FIFA와 UEFA, FARE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C)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 EP)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41)] 또한, 1996년에 설립한 선수를 중심으로 세상의 인종차별 철폐를 호소하는 "인종차별에는 레드카드를(Show Racism The Red Card)" 나 축구에서 인종차별과 싸우는 "축구의 단합과 인종 차별주의 철폐(Football Unites, Racism Divides)" 등 反인종차별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42)]

영국의 민간기구들이 인종차별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

40) UEFA & FARE, *unite against racism in european football*, 2003, at 11.
41) 킥 잇 아웃, 〈https://www.kickitout.org/〉,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42) 더 레드카드, 〈https://www.theredcard.org/〉,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있지만, 인종차별행위가 발생하였다. 일례로 2011년 당시 프리미어리그 1부 퀸스파크레인저스 FC(FC. Queens Park Rangers)에 소속되어 있던 영국 출신의 안톤 퍼디난드(Anton Julian Ferdinand) 선수가 상대의 첼시(FC Chelsea Football Club) 소속 영국 출신의 존 테리(John George Terry) 선수로부터 인종차별적 언사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존 테리 선수는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안톤 퍼디난드의 동생이자, 같은 축구선수였던 리오 퍼디난드(Rio Gavin Ferdinand)가 영국 축구협회(British Football Association)와 영국 축구 프로선수 협회(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의 미온적인 대응에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있다.[43]

Ⅳ. K리그1에서의 시사

1. K리그1에서의 인종차별 현황

가. K리그1에서의 외국인 선수의 등록

K리그1는 대한민국에서 1983년에 아시아 최초의 본격 프로 리그로 출범한 "슈퍼리그"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에 도입된 승강제로 지어진 1부의 이름 K리그 클래식을 2018년부터 K리그1으로 변경하였다. K리그1은 전년도와 똑같이 12개팀이 3차에 걸쳐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Round Robin Scheduling : RR)을 치르는 정규 라운드로서 33라운드와 정규 라운드 성적을 토대로 나누어진 상·하위 스플릿

43) 미러, "Cleared: Chelsea captain John Terry found not guilty of racially abusing Anton Ferdinand", 〈http://bitly.kr/DHQ7zO〉,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시스템(split system) 내에서 6개 팀이 싱글 라운드 로빈을 치르는 스플릿 시스템 라운드로서 34~38라운드가 진행된다.[44]

이후 리그가 끝난 뒤 우승, 준우승팀에게는 챔피언스리그 2020 조별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며, 리그 3위에게는 아시아 축구 연맹(Asian Football Confederation :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playoff) 출전권이 주어진다. 만약 리그 3위 이내의 팀이 FA컵(Football Association Cup)에서 우승하는 경우, 리그 3위까지 조별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며 리그 4위가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획득하게 되며, 리그 최하위 12위는 자동으로 K리그2로 강등된다.[45]

K리그는 2009년부터 외국인 선수를 2명까지 보유 및 출장을 할 수 있으며, 내셔널리그(Korea National League) 또한 외국인 선수를 2명까지 보유 및 출장을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출범한 K리그 챌린지(K League Challenge)의 경우에도 기존 K리그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46]

나. K리그1에서의 인종차별 이슈

우리의 K리그1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는 인종차별 문제는 유럽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47] 이와 같은 이유는 K리그1은 대한축구협회(KFA)가 FIFA에서 마련한 세계 기준에 맞는 규정

---

44) 케이리그, 〈https://www.kleague.com/about/Competition〉, (최종방문일 2019년 6월 12일).

45)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 승강제도의 '흥미로운 공식'", 〈https://www.yna.co.kr/view/AKR20160324153400007〉, (최종방문일 2019년 6월 12일).

46) 케이리그, 〈https://www.kleague.com/about/Competition〉, (최종방문일 2019년 6월 12일).

47) 지난해 포항 소속이었던 노병준(대구)이 SNS에 인종 차별성 글을 남겼다가 구단 자체징계를 받은 정도다. 스포츠 조선, "우라와 사건 반면교사, K-리그 인종차별에 '철퇴'"〈http://bitly.kr/JrXgb8〉, (최종방문일 2019년 6월 12일).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종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축구협회는 정관 제3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란 제목 아래, “협회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축구협회는 경기장에서의 폭력, 인종차별 등을 예방하려는 특별조치로 더욱 강력한 징계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48]

인종차별은 기본적으로 백색인종과 유색인종 사이의 권력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구조로 되어 있다.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규정함으로써 축구가 갖는 다채로움을 제한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계 선수들도 유색인종에 속하지만 백색인종들에 의한 탄압이나 차별은 크게 경험한 적은 없다. 오히려 백인들의 문화를 소비하고 누림으로써 유색인종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 정서를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같은 아시아인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K리그1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국적 선수가 있으므로 인종차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축구 리그에서 인종차별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48)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2017.1.16.)에서는 성, 국적,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심판이나 감독관, 협회나 시도협회 연맹 인원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와 자격정지를, 팀에 대해서는 벌금, 출전정지, 승점 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 인종차별행위의 법적 규제와 근절방안

가. 인종차별행위의 법적 규제

(1) 총설

축구리그에서 인종차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바로 형사제재를 통해 인종차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인종차별행위를 방지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금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형성적(formative) 규제의 방식으로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상황을 변화시켜 사전예방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축구선수와 축구 애호가들의 자율적 규제로 설명할 수 있다.

(2) 형사처벌을 통한 규제

인종차별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범죄의 하나로 접근한다면, 형사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들 수 있다. 축구리그에서의 인종차별행위는 팬 또는 선수에 의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행 형법은 공공연한 모욕표현에 대해 모욕죄(제311조)를 인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멸과 멸시로,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49] 따라서 구체적인 진술보다는 욕설이나 경멸적 용어를 사용한 혐오표현이 모욕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공연한 혐오표

---

49)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3, 201면.

현의 일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형법」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루어진 명예훼손 행위를 제1항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행위 태양은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 주장에 의한 표현행위에만 해당한다. 이때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허위의 사실인 경우는 진실한 사실이면 비해 형량이 가중된다. 반면, 의견 진술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50] 의견은 인식적이고 가치적인 요소를 가진 주관적인 개념으로, 옳고 그름의 여부가 자유로운 토론으로 조정과 합의의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종차별행위로서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축구 경기에 있어서 인종차별표현은 경기의 승패와 관련한 편견에 기초하여 이를 이유로 상대방을 박해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때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서 진실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모두 명예훼손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SNS에서의 인종차별표현의 경우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규정

---

50)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도2956; 대법원 2000.7.28. 선고 99다6203).

의 제1항에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중 명예훼손정보(제2호)와 반복적인 공포심·불안감 유발정보(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불법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법 제73조). 다만, 동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표현의 발화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법 제74조)

(3)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일부의 인종차별표현을 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민사적 명예훼손은 「민법」 제764조와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형법과는 달리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규제보다 그 대상행위가 비교적 넓게 이해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삼자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 어떠한 주장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독자 또는 청취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51]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둘째,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진다. 셋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공연성은 「민법」 제764조의 민사상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삼자에게 공개하

51)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 1993, 400면.

는 것으로 충분하다.[52] 넷째, 원고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섯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이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민법」 제751조에 의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여야 한다.[53] 이외에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인종차별표현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54]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행위를 구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침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 제1호).

이에 축구 경기에서의 인종차별행위는 헌법에서의 평등권을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평등권 침해에 대한 인종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

52) 대법원 판결은 불법 행위법에서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불특정인 또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사회상 지위를 훼손하는 사실을 제삼자에게 표명하기만 하면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유포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261, 판결).

53) 현대호. “개인의 감정적 평온에 관한 불법행위”, 「한양법학」 제24집, 한양법학회, 2008, 35면.

54) 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

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함),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행위를 의미한다(법 제2조 제3호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규칙」 제2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이다. 그리고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이다. 축구 경기에서의 인종차별행위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나. K리그1에서의 인종차별 예방방안

(1) SNS에 의한 인종차별의 자율적 규제

최근 K리그1 팬들에 의한 SNS를 이용한 인종차별적 내용의 게시물이 매년 횡행하고 있다. SNS 계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K리거의 SNS에 자신의 생각을 게시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SNS에 손쉽게 게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어렵고, 아이디에 숨겨진 본인의 실제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SNS는 24시간 그리고 365일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 감시가 불가능하다. 사실 K리그1에서의 SNS 이용에 의한 인종차별은 경기 중이 아닌 경기 후 일어났다. 그리하여 트위터와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연계하여 인종차별적 내용의 게시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팬들에 의한 SNS 이용에 대한 일정한 벌칙 등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잉글랜드와 웨일스 프로축구선수협회(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이하 "PFA"로 지칭함)[55]는 인종차별 항의 차원에서 24시간 SNS 보이콧(boycott)을 선언하였다. 잉글랜드에서 활약 중인 축구선수들이 인종차별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팬들과의 소통 창구를 24시간 동안 차단한 것이다. PFA는 2019년 4월 19일에 모든 선수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PFA는 소속 선수 전원에게 개개인의 SNS 플랫폼을 통해 "적당히"를 의미하는 해시태그 "#Enough"를 게재하고, 24시간 동안 팬들과의 소통 창구를 차단해달라고 당부하였다. PFA는 이와 같은 SNS 보이콧은 선수들이 합심해 인종차별을 근절해야 한다는 단일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56]

(2) 전문가 직역의 설치

K리그1에서는 클럽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준법 감시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준법 감시인은 기업의 법령 준수의 책임자로서 기업 윤리의 관점에서 경영진을 지원하고 자문을 한다.[57] 이에 축구 구단의 준법 감시인은 축구

55) PFA는 프리미어 리그를 포함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축구협회에 등록된 프로축구단에서 활약 중인 모든 선수가 소속된 단체다. 더 피에프에이, 〈https://www.thepfa.com/〉,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56) 인디펜던트, "PFA social media boycott: Premier League stars to stay off platforms for 24 hours in protest at racist abuse", 〈http://bitly.kr/LrPzVc〉, (Last visited on 12 June 2019).

57) 참고로 준법감시(Compliance)란 일반적으로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

윤리강령의 개발 및 규정의 준수 그리고 조직의 내부 통제 정비 계획의 수립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준법 감시인은 대한축구협회가 페어플레이(Fair Play)의 시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준법 감시인은 올바른 축구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적 교육과 규범으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직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준법 감시인은 소위 감사위원회와 다르게 지배구조의 내부 감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스포츠계에 적용하여 올바른 축구 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선수와 서포터들이 올바른 축구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준법 감시인의 또 다른 역할은 축구의 활동 현장에서의 폭력과 폭언 등을 없애기 위한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페어플레이의 관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선수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 구축, 특히 페어플레이를 침해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승부 조작 대책 세미나 실시, 부당한 요구 방지 책임자 강습 금지, 인권 연수, 준법 교육을 할 수 있다.

특히 인종차별과 관련한 교육내용은 선수들과 서포터들이 유색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자국 내에

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로 통제·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에 있어서 준법감시기능(Compliance)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말하며, 준법 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은행 준법 감시인 제도운영 모범규준, 2006, 3면.

영향력이 큰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드라마나 영화, 광고 같은 영상매체들을 만들 때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흑인, 유색인종들은 감싸줘야 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흑인과 유색인종도 백인과 똑같은 인간이며, 그들도 하나의 개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3)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의 개정

인종차별 금지를 위하여 법제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현재 각 나라에 흑인, 유색인종 차별에 관한 법,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영향력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법, 제도에 엄중한 처벌이나 엄중한 기준이 정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이에 법과 제도에 엄격한 기준과 엄격한 처벌이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담은 법 제도도 구축이 된다면 흑인과 유색인종에 차별이 해소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이 시행 중이다. 이 규정 제1조(목적)와 제2조(대상) 조항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시행하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협회 임직원, 시도협회, 연맹단체 및 소속 임·직원, 협회에 등록된 단체(팀)와 선수, 지도자 등 그 소속원, 심판 등 기타 협회의 행정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다. 징계규정에서 징계의 판단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징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인종차별과 관련한 징계규정은 별표1에 마련된 “유형별 징계기준”의 “7. 성범죄 등 차별행위”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규

정에서 “다. 성,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을 할 시에는 선수에 대하여 “출전정지 3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에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같이 “7. 성범죄 등 차별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와 인종차별행위는 성질과 행위 자체가 다르므로 같은 범주에 묶는 것은 자칫 두 행위가 같은 법적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그리하여 라목을 추가하여 “라. 인종차별 행위”를 신설하여 인종차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표 1〉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별표 1〕 유형별 징계기준

유형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심판, 감독관	팀	협회, 시도협회 연맹 임원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7. 성범죄 등 차별 행위	가. 성범죄 (성폭행, 추행)	자격정지 2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벌금, 출전정지, 승점 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해임 또는 제명	-
	나. 성희롱	출전정지 1년 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다. 성,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	출전정지 3월 이상 - 자격정지 2년 이하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	자격정지 1년 이상 - 3년 이하		자격정지 1년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	-

〈표 2〉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별표 1〕 유형별 징계기준 개정案

<table>
<tr><th rowspan="2">유형</th><th rowspan="2">내용</th><th colspan="6">대상 및 징계기준</th></tr>
<tr><th>선수</th><th>지도자 또는 팀 임원</th><th>심판, 감독관</th><th>팀</th><th>협회, 시도협회 연맹 임원</th><th>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th></tr>
<tr><td rowspan="3">7. 성범죄 등 차별 행위</td><td>가. 성범죄 (성폭행, 추행)</td><td>자격정지 2년 이상 - 제명</td><td>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td><td>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td><td rowspan="3">벌금, 출전정지, 승점 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td><td>해임 또는 제명</td><td rowspan="2">-</td></tr>
<tr><td>나. 성희롱</td><td>출전정지 1년 이하</td><td>자격정지 2년 이하</td><td>자격정지 2년 이하</td><td>자격정지 2년 이하</td></tr>
<tr><td>다. 성, 국적, 종교에 따른 차별</td><td>출전정지 3월 이상 - 자격정지 2년 이하</td><td>출전정지 6개월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td><td>자격정지 1년 이상 - 3년 이하</td><td>자격정지 1년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td><td>-</td></tr>
<tr><td></td><td>라. 인종에 따른 차별</td><td>출전정지 6월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td><td>출전정지 1년 이상 - 자격정지 4년 이하</td><td>자격정지 1년 이상 - 4년 이하</td><td>자격정지 2년 이상 - 자격정지 4년 이하</td><td>-</td></tr>
</table>

V. 결

이 글에서는 축구에서의 인종차별행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뒤 K리그1의 인종차별의 사례와 그 대책을 유럽 축구리그와 비교하여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유럽 축구리그에서의 인종차별행위는 주로 SNS에서 발생하며, 유색인종에 대한

비난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축구 경기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축구협회 등이 실시해야 개선책으로 SNS 관련 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인종차별 게시물 방지 시스템과 서포터를 향한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축구 경기는 선수와 스텝, 관중 등 수많은 사람이 집결하여 장소와 시간상 제한을 두고 벌이는 하나의 이벤트로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리하여 많은 관중이 모이다 보면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이 분출되다 보면 인종차별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종차별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축구 경기에서 인종차별행위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축구 관련 국제단체들은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인종차별적 행위를 관중이 할 경우에도 징계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구단이 인종차별 행위를 했을 때 벌금, 몰수패, 감점,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에는 관중에 의한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 축구 K리그는 지금까지 인종차별과는 거리가 먼 청정 구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에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浦和レッドダイヤモンズ)가 'Japanses only'라는 현수막에 맞서서 2015년에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Stadium for football not only for Korean'이라는 현수막은 인종차별에 관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유럽 축구에서는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종차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결국, K리그1에서의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선 정치와 법제, 문화 차이 등 모든 면에서 방지대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상겸, “스포츠기본권의 보장과 국민체육진흥의 법적과제;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11.

김혜명, “흑인의 과학적 인종주의에 관한 고찰 : 보아스학파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제9권 제2호,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2018.

남기연,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과 그 책임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5.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3.

장 민, “유럽 축구리그의 이적제도와 유럽사법재판소의 보스만 판결”,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현대호. “개인의 감정적 평온에 관한 불법행위”, 「한양법학」 제24집, 한양법학회, 2008.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 1993.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금융감독원, 은행 준법감시인 제도운영 모범규준, 2006.

2. 외국 문헌

Babacar M’Baye,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Impact of the Atlantic Slave Trade on Africa, *European Legacy*, 11(6), 2006.

Cathal Kilcline, *Sport and Society in Global France: Nations, Migrations, Corporations (Studi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France)*, Liverpool University Press, March 1, 2019.

CLELAND, J. and CASHMORE, E., Football fans’ views of racism in British

football.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51, No.1, 2016.

FABIO WAGNER, HOLGER PREUSS, KIM SCHU, *Mainzer Papers on Sport Economics & Management*,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of Mainz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19.

Hira Singh, Confronting Colonialism and Racism: Fanon and Gandhi, *Human Architecture: Journal of the Sociology of Self Knowledge*, Vol.5, Iss. 3, Article 31, 2007.

Hugo Sarmento, Antonino Pereira, Nuno Matos, Jorge Campaniço, Maria T., Anguera, and José Leitão, *English Premier League, Spain's La Liga and Italy's Serie's A-What's Differ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erformance Analysis in Sport, 2013, 13.

Ian Preston and Stefan Szymanski, RACIAL DISCRIMINATION IN ENGLISH FOOTBALL,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47, No.4, September 2000.

Jon Garland and Michael Rowe, *Racism and Anti-Racism in Football*, PALGRAVE, 2001.

Rayner Thwaites, *REPORT ON CITIZENSHIP LAW : AUSTRALIA*, Global Citizenship Observatory, 2017.

SHULA MARKS, *White Masculinity: Jan Smuts, Race and the South African War*,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111, 2001.

Smith, Marvin, Union Royale Belge de Sociétés de Football Association ASBL v. Jean-Marc Bosman: The Evolution of Labor Law in Professional Soccer and its Implication, *Claremont-UC Undergraduate Research Conference on the European Union*, Vol. 2007.

UEFA & FARE, *unite against racism in european football*, 2003.

UNESCO, *Colour? What Colour? Report On The Fight Against Discrimination And Racism In Football*, 2015

Deutscher Fußball-Bund, Football is the Future, 2013.

Heinrich-Böll-Stiftung, Fußball & Integration, 2006.

3. 웹사이트

스포츠 조선, “우라와 사건 반면교사, K-리그 인종차별에 ‘철퇴’ ”, <http://bitly.kr/JrXgb8>.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 승강제도의 ‘흥미로운 공식’ ”, <https://www.yna.co.kr/view/AKR20160324153400007>.

외교부, <http://www.mofa.go.kr>.

한국일보, “유럽 축구시장 32조원 규모 사상 최대 … EPL만 6조, <http://bitly.kr/uB0yPF>.

UN 홈페이지, <http://www.un.org/en/events/africandescentdecade/slave-trade.shtml>.

더 가디언, “Mario Balotelli asks: ‘Is racism legal in France?’ after accusing Bastia fans”, <http://bitly.kr/rsGz7W>.

더 가디언, “Nicolas Anelka faces lengthy ban after controversial quenelle gesture”, <http://bitly.kr/OdQuNF>.

더 레드 카드, <https://www.theredcard.org/>.

더 피에프에이, <https://www.thepfa.com/>.

독일 알룸니포털, “Vielfalt schießt Tore: Ausländische Spieler in der Fußball-Bundesliga”, <http://bitly.kr/ZagHsT>.

독일축구협회, <http://bitly.kr/0c8hZw>.

디스 이즈 안필드, “Daniel Sturridge discusses experiencing racism as a player”, <http://bitly.kr/TS7h80>.

미러, “Cleared: Chelsea captain John Terry found not guilty of racially abusing Anton Ferdinand”, <http://bitly.kr/DHQ7zO>.

비비씨, “Luis Suarez charged with racially abusing Patrice Evra”, <https://www.bbc.co.uk/sport/football/15764900>.

비비씨, “Manchester United: Romelu Lukaku chant is ‘racist’ - Kick It Out”, <https://www.bbc.com/sport/football/41317495>.

스카이 스포츠, “Baros denies racism claims”, <http://bitly.kr/aBSc0J>.

영국 텔레그래프, “Mario Balotelli has received more than 4,000 racist messages on social media this season”, <http://bitly.kr/6Ip1rS>.

웰트푸스발, “Bundesliga 2016/2017 » Zuschauer » Heimspiele”, <https://www.weltfussball.de/zuschauer/bundesliga-2016-2017/1/>.

인디펜던트, “PFA social media boycott: Premier League stars to stay off platforms for 24 hours in protest at racist abuse”, <http://bitly.kr/LrPzVc>.

케이리그, <https://www.kleague.com/about/Competition>.

킥 잇 아웃, <https://www.kickitout.org/>.

텔레그래프, “Eto'o on verge of walking off after racist abuse at Zaragoza”, <http://bitly.kr/pqpIEX>.

<Abstract>

A Study of correspondence of racism in the European soccer league

- With a focus on the Implications of K-league1 -

Lee, Chang-Kyu*

Sports are necessary to live a healthy and happy life of the people. These sports are special areas that bring different religions, origins and races together. Representative sports are the Olympics and the World Cup, in which many people participate.

Football is the most popular sports game. The people of the most countries in the world are enjoying soccer. Even in countries where the population is small, soccer has a national football team. The reason why football is so popular is that even beginners can play games easily.

This is a football that has gained a lot of popularity, but you can see how it collides with players and players in the league, players and spectators, and spectators and spectators. In this process, racism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differences in skin color and origin. International sports organizations are also taking positive measures to eradicate racism. So racism is no longer just a problem in other countries.

Racism in football is mainly caused by social networking sites and is due to people of color. Therefore, in order to eliminate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soccer game, if the football association has to carry out, as an improvement measure racial discrimination posting system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SNS related companies and racial discrimination for supporters Needs to be involved in educational activities.

Key Words : soccer, racism, K-League1, Bosman case, racial discrimination

---

* S.J.D., Section Chief of Korea Technology Transfer Agents Association.